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6. 15 선고 2022나514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6. 15 선고 2022나5140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단379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용효, 송문기

피고, 피항소인1.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 피항소인2. G

피고, 항소인3.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김상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김영찬

피고, 피항소인4. I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변론 종결 2023. 5. 11.

판결 선고 2023. 6. 15.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단379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J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1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35,3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G 사이에 별지 1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1,766,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며, J과 피고 H 사이에 별지 1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47,064,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I 사이에 별지 1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47,075,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대한민국에 대한,

1) 피고 F은 24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38,986,666원 부분을, 원고 B에게 43,146,666원 부분을, 원고 C에게 42,413,333원 부분을, 원고 D에게 56,533,333원 부분을, 원고 E에게 54,240,000원 부분을 각 양도하고,

2) 피고 G은 12,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1,949,333원 부분을, 원고 B에게 2,157,333원 부분을, 원고 C에게 2,120,666원 부분을, 원고 D에게 2,826,666원 부분을, 원고 E에게 2,712,000원 부분을 각 양도하며,

3) 피고 H은 48,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7,797,333원 부분을, 원고 B에게 8,629,333원 부분을, 원고 C에게 8,482,666원 부분을, 원고 D에게 11,306,666원 부분을, 원고 E에게 10,848,000원 부분을 각 양도하고,

4) 피고 I는 15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24,366,666원 부분을, 원고 B에게 26,966,666원 부분을, 원고 C에게 26,508,333원 부분을, 원고 D에게 35,333,333원 부분을, 원고 E에게 33,900,000원 부분을 각 양도하며,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J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1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피고 G 사이에 별지 1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피고 H 사이에 별지 1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피고 I 사이에 별지 1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대한민국에 대한, 피고 F은 240,000,000원의, 피고 G은 12,000,000원의, 피고 H은 48,000,000원의, 피고 I는 150,000,000원의 각 배당금 채권을 원고들에게1)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J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1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피고 G 사이에 별지 1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피고 I 사이에 별지 1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대한민국에 대한, 피고 F은 240,000,000원의, 피고 G은 12,000,000원의, 피고 I는 150,000,000원의 각 배당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 H

제1심판결 중 피고 H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은 2016년경부터 청주 지역 일대에서 수십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던 계주였는데, 2020. 9.경 운영하던 모든 낙찰계를 파계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고 A은 아래와 같이 J이 운영한 낙찰계(낙찰계일 기준 1일계, 3일계, 8일계, 10일계, 12일계, 18일계, 27일계)에 각 가입하였고, J에게 파계 시점 이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²⁾ 총액은 75,500,000원이다. 한편 위 원고는 10일계 1구좌에 관한 계금을 수령하였는바, 계금을 지급받은 낙찰계와 관련하여 J에게 지급하여야 할 남은 계불입금 총액은 2,400,000원으로, 이를 공제하고 위 원고가 J에게 지급한 계불입금은 73,100,000원이다.

시작일	2017. 10.	2016. 7.	2017. 3.	2017. 2.	2019. 1.	2019. 7.	2017. 6.
가입구좌수	1	1/3	1	23) 2 구좌 중 1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1	1/2	1
월 납입금	5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40만원	40만원
총 구좌수	50	80	70	70	50	50	80
납입횟수	35	50	42	42	20	13	38

다. 원고 B는 아래와 같이 J이 운영한 낙찰계(낙찰계일 기준 3일계, 12일계, 15일계, 18일계)에 각 가입하였고, J에게 파계 시점 이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 총액은 80,900,000원이다.

시작일	2016. 7.	2019. 12.	2018. 4.	2019. 7.
가입구좌수	1	4	2	1
월 납입금	30만 원	5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총 구좌수	80	50	60	50
납입횟수	50	20	29	14

라. 원고 C은 아래와 같이 J이 운영한 낙찰계(낙찰계일 기준 1일계, 3일계, 8일계, 10일계, 12일계, 15일계, 18일계, 27일계)에 각 가입하였고, J에게 파계 시점 이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 총액은 91,225,000원이다. 한편 위 원고는 3일계 2구좌, 15일계 1구좌, 10일계 1/3 계좌에 관한 계금을 수령하였는바, 계금을 지급받은 낙찰계와 관련하여 J에게 지급하여야 할 남은 계불입금 총액은 11,700,000원으로, 이를 공제하고 위 원고가 J에게 지급한 계불입금 총액은 79,525,000원이다.

시작일	2017. 10.	2016. 7.	2017. 3.	2017. 2.	2019. 1.	2018. 4.	2019. 7.	2017. 6.
가입구좌수	1	2와 1/34) 2와 1/3 구좌 중 2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1	25) 2 구좌 중 1/3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1	1과 1/26) 1과 1/2 구좌 중 1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1/2	1
월 납입금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35만 원 17만 5,000원	40만 원	40만 원
총 구좌수	50	80	70	70	50	60	50	80
납입횟수	35	50	41	41	19	27	12	38

마. 원고 D은 아래와 같이 J이 운영한 낙찰계(낙찰계일 기준 3일계, 27일계)에 각 가입하였고, J에게 파계 시점 이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 총액은 106,000,000원이다.

시작일	2016. 7.	2017. 6.
가입구좌수	2	57) L 명의의 1구좌를 양수받았다.
월 납입금	30만 원	40만 원
총 구좌수	80	50
납입횟수	50	38

바. 원고 E은 아래와 같이 J이 운영한 낙찰계(낙찰계일 기준 8일계, 10일계, 12일계, 27일계)에 각 가입하였고, J에게 파계 시점 이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 총액은 101,700,000원이다.

시작일	2017. 3.	2017. 2.	2019. 1.	2017. 6.
가입구좌수	3	2	2	1
월 납입금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총 구좌수	70	70	50	80

시작일	2017. 3.	2017. 2.	2019. 1.	2017. 6.
납입횟수	43	44	21	39

사.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영하던 낙찰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계하고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① 피고 F과 사이에 2020. 9. 8. 별지 1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51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피고 G과 사이에 2020. 9. 1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84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③ 피고 H과 사이에 2020. 9. 1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84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④ 피고 I과 사이에 2020.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92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J과 피고들이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배당기일인 2021. 11. 9. 위 법원은 피고 F에게 240,000,000원, 피고 G에게 12,000,000원, 피고 H에게 48,000,000원, 피고 I에게 15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은 2021. 10. 25.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가액배상청구채권(피고 F은 J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20. 9. 8. 사해행위로 근저당설정, 피고 G, H은 J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각 2020. 9. 16. 사해행위로 근저당설정, 피고 I는 J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20. 9. 18. 사해행위로 근저당설정)"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위 각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21카단51719 결정).

차. J은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었고, 2021. 4. 27.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2021. 6. 16. J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1고단863 판결). 한편 J은 그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J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0. 사망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21. 7. 27. 공소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21노827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5, 8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가. 개요

원고들이 J에 대하여 과연 그 각 주장과 같은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는지(원고들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계불입금 반환채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낙찰금 지급채권 등으로 그 주장을 달리하였으나,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 계불입금 반환채권으로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지된 경우, 계주와 계원간의 일정한 계금 또는 계불입금청산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특약이 없으면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뒤에 급부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고, 계원이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 납입한 계부금에 대하여 계주가 이를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구성하는 계원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다(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240 판결 등 참조).

또한,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납입 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J이 운영한 각 낙찰계가 파계에 이른 2020. 9.경 J에 대한 원고 A의 73,100,000원, 원고 B의 80,900,000원, 원고 C의 79,525,000원, 원고 D의 106,000,000원, 원고 E의 101,700,000원의 각 계불입금 반환채권이 성립하는바, 이와 같은 계불입금 반환채권은 그 무렵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낙찰계가 실제 파계된 시점은 2020. 9.경인데, 설령 그 정확한 파계 시점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9. 8., 2020. 9. 16., 2020. 9. 18.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파계에 따른 계불입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계불입금 반환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계불입금 반환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들 중 계금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계불입금 반환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계금을 받은 다른 계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며, ③ 원고 A의 경우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J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더 많고, ④ 일부 원고들은 입금 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은 일부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당 낙찰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또한, 원고들이 계금을 받은 다른 계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낙찰계가 파계에 이른 이상, 계주인 J에 대한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은 원고 A이 가입한 낙찰계 중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므로, 설령 낙찰계 이외의 다른 이유로 원고 A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J이 계불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거나 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변제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계불입금 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은 파계 직전까지 J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까지 산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남은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일부 원고들이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계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J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J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피고 F은 선의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선의를 주장하고 있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선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고들의 주장이나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들이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 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4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21. 10. 25.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위 법원 2021카단51719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들이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의 J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피고들의 확정된 배당액 450,000,000원보다 적은 441,225,000원(= 73,100,000원 + 80,900,000원 + 79,525,000원 + 106,000,000원 + 101,700,000원)이므로, 8) 이를 한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배당금 채권을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9) 2) 이에 따라 먼저 J과, ①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35,320,000원(= 240,000,000원 × 441,225,000원 / 4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② 피고 G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1,766,000원(= 12,000,000원 × 441,225,000원 / 4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며, ③ 피고 H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47,064,000원(= 48,000,000원 × 441,225,000원 / 4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④ 피고 I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47,075,000원(= 150,000,000원 × 441,225,000원 / 4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대한민국에 대한, ① 피고 F은 24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38,986,666원(= 235,320,000원 × 73,100,000원 / 441,225,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분을, 원고 B에게 43,146,666원(= 235,320,000원 × 80,900,000원 / 441,225,000원) 부분을, 원고 C에게 42,413,333원(= 235,320,000원 × 79,525,000원 / 441,225,000원) 부분을, 원고 D에게 56,533,333원(= 235,320,000원 × 106,000,000원 / 441,225,000원) 부분을, 원고 E에게 54,240,000원(= 235,320,000원 × 101,700,000원 /

441,225,000원) 부분을 각 양도하고, ② 피고 G은 12,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1,949,333원($= 11,766,000\text{원} \times 73,1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B에게 2,157,333원($= 11,766,000\text{원} \times 80,9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C에게 2,120,666원($= 11,766,000\text{원} \times 79,525,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D에게 2,826,666원($= 11,766,000\text{원} \times 106,0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E에게 2,712,000원($= 11,766,000\text{원} \times 101,7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각 양도하며, ③ 피고 H은 48,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7,797,333원($= 47,064,000\text{원} \times 73,1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B에게 8,629,333원($= 47,064,000\text{원} \times 80,9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C에게 8,482,666원($= 47,064,000\text{원} \times 79,525,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D에게 11,306,666원($= 47,064,000\text{원} \times 106,0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E에게 10,848,000원($= 47,064,000\text{원} \times 101,7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각 양도하고, 4) 피고 I는 15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24,366,666원($= 147,075,000\text{원} \times 73,1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B에게 26,966,666원($= 147,075,000\text{원} \times 80,9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C에게 26,508,333원($= 147,075,000\text{원} \times 79,525,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D에게 35,333,333원($= 147,075,000\text{원} \times 106,0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원고 E에게 33,900,000원($= 147,075,000\text{원} \times 101,700,000\text{원} / 441,225,000\text{원}$) 부분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표

판사신종오

판사강성훈

별지

피보전채권액으로 안분하여 양도하라는 취지의 제1심 일부 인용 판결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구두 답변 내용과 2023. 5. 26. 자로 제출한 참고서면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자신들의 피보전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2) 혼동이 없도록 이하 계원들이 J에게 납입한 돈을 "계불입금"이라고 부르고, J이 계원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돈(낙찰금에 해당한다)을 "계금"이라고 부른다.

3) 2 구좌 중 1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4) 2와 1/3 구좌 중 2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5) 2 구좌 중 1/3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6) 1과 1/2 구좌 중 1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수령하였다.

7) L 명의의 1구좌를 양수받았다.

8) 피고들의 배당액과의 차액은 8,775,000원이다.

9) 한편 피고 F, I는 2022. 1. 5.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E(위 준비서면의 "원고 M'은 오기로 보인다)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가압류채권자가 아니어서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도 배당요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주장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원고 E이 가압류채권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렇지 않으며, 피고들이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배당금 채권의 양도 및 통지를 통한 원상회복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